

시 의 회 보 고

〈 (재)서울장학재단 정관 개정 〉

2022. 2.

평 생 교 육 국

(재) 서울 장학재단 정관 개정

□ 개정사유

- 목적사업을 “장학금 지급사업”에서 “장학사업”으로 개정하여 목적사업의 범위를 확장하고,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기관 결산 기준」 및 「공익법인회계기준」에 의거 결산서의 용어를 정비.
- 직무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연직 감사를 지도·감독 권한이 있는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장으로 변경.

□ 주요내용

조항	주요 내용	관련 근거
제4조(사업) 개정	- (개정)목적사업 범위 확장 · 장학금 지급사업 → 장학사업	
제16조(예산서 및결산서제출) 제1항~제2항 개정	- (개정)결산서 용어 정비 · 대차대조표 → <u>재무상태표</u> · 손익계산서 → <u>운영성과표</u>	- 「지방출자·출연기관 결산기준」(2020. 4.) - 공익법인회계기준(2017)
제20조(임원의 선임방법)제6항 개정	- (개정)직무감사(당연직) · 시 감사담당관 → <u>시 교육정책과장</u>	- 감사담당관 요청(2021.9)
부칙	- 제1조(시행일) ·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	

붙임 1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<p>제4조(사업)</p> <p>①이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<u>장학금지급 사업</u>을 행한다.</p>	<p>제4조(사업)</p> <p>①이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<u>장학사업</u>을 행한다.</p>
<p>제16조(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)</p> <p>①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.</p> <p>1. <u>추정대차대조표</u> 및 그 부속명세서</p> <p>2. <u>추정손익계산서</u> 및 그 부속명세서</p> <p>②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 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·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 및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</p> <p>1. <u>대차대조표</u> 및 그 부속명세서</p> <p>2. <u>손익계산서</u> 및 그 부속명세서</p>	<p>제16조(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추정재무상태표</u> 및 그 부속명세서</p> <p>2. <u>추정운영성과표</u> 및 그 부속명세서</p> <p>② ~~~~~ ~~~~~ ~~~~~ ~~~~~ ~~~~~.</p> <p>1. <u>재무상태표</u> 및 그 부속명세서</p> <p>2. <u>운영성과표</u> 및 그 부속명세서</p>
<p>제20조(임원의 선임방법)</p> <p>①~⑤ (생략)</p> <p>⑥감사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사로 구분하며, 직무감사는 <u>시 감사담당관</u>을 당연직으로 하고, 회계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자로 한다.</p>	<p>제20조(임원의 선임방법)</p> <p>①~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~~~~~, 직무감사는 <u>시 교육정책과장</u>을 ~~~~~ ~~~~~.</p>
<p>부 칙</p> <p><신 설></p>	<p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</p> <p>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 (2021.12.6)부터 시행한다.</p>